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06일

삼학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고 *구	고 *구 1917-02-01	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로 (오룡동)	직권말소 2021-12-06